

「2021/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계획 2차  
-토지확보, 활용 및 실행관리조직(PMO) 운영

## 과업지시서

2021. 1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4
3. 과업내용.....	4
4. 과업의 일반원칙.....	9
5. 과업수행 방법.....	12
6. 과업성과품 제출.....	13
7. 보안대책.....	16

# I. 과업지시서

## 1. 개 요

□ 과업명 : 「2021/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계획 2차 - 토지확보, 활용 및 실행관리조직(PMO) 운영

※ 본 과업은 '20/21 EIPP 신수도 개발 종합계획 수립 1단계의 연속 프로젝트로 신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 방안, 민관협력 모델을 통한 토지 활용 방안, 신수도 전담추진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등 1차년도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과업배경

○ 수도이전 개관

- 자카르타와 자바섬의 인구집중 및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고 심각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물 문제, 지반침하 등 도시문제 대두

\*자카르타 수도권에 3천만 명 밀집, 전체인구의 57%가 자바섬 거주

- 정부기관이 자카르타와 보고르에 분산되어 있어 공공행정 효율성이 저하

- 이에, 인니정부는 자바섬 밖 동부 칼리만탄섬(Kutai Kartanegara군, 北 Penajam Paser군)에 전략적 수도이전을 시행하여 불평등, 불균형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인니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음



- 제약요인
  - 토지 확보는 수도이전을 위한 중요 사안으로 관련 연구 및 감정평가/보상 등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음
  - 이에 수도이전을 경험한 다른 나라의 토지수용 법규, 절차, 방법, 실행, 집행기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하는 상황
  - 또한, 수도이전 대상지의 개발기대감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투기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방안 등 관련 연구의 필요성 대두
  
- 협력국 정책 부합성
  - EIPP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세종시 사례 심층분석 제공 및 신수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함으로써 인니정부의 수도이전을 지원하였으며,
  - 2차년도 사업을 통해 수도이전 실행의 첫단추가 되는 토지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한 토지활용방안, 통합시행 실행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제공시 인니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정책 부합성
  - 수도이전 관련 사례로 한국이 2005년 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구체화된 행정수도 법체계, 토지수용 및 활용법 등 토지확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신수도 관련 양국 간 민/관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G2G 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마중물로 KSP, K-City Network 등 여타 정책 자문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경제협력국가 핵심분야 진출 및 해외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 필요성
  - 국가개발기획부 및 농지공간기획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법(Law Number 2 of 2012 on Land Acquisition for Development in the Public Interest)에는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과정이 4단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니 정부는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토지 가치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수도이전을 경험한 다른 나라의 토지수용 법규, 절차, 방법, 실행, 집행기관에 대한 심층 연구를 요청하였음

- 또한,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한국의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신수도 지역의 토지 확보, 토지 활용 방안, 신수도 실행관리조직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의 정책자문을 요구함
- 이에, EIPP 1차년도 사업인 신수도 개발 종합계획 수립의 신도시 건설 계획 기준, 건설 기본계획, 정부핵심지역 특화발전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인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수도 개발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수도 운영 구체화 및 특화방안을 제공하여, 실제 신수도 건설이 이행되도록 한국의 경험 및 지식을 전파하고자 함

#### □ 과업목적

※ EIPP 2차년도 사업 주제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신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안, 민간 투자 유을 통한 토지활용 방안, 신수도 실행관리조직의 설립 및 운영 방안 등 정책 자문 제공을 통해 신수도 개발계획의 고도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 신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안 제시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대상지의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예측에 따라, 전매금지, 가격담합 등의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가격 규제방안 마련
- 적정가격으로 신수도 개발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보상 및 수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법제도 및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종, 푸트라자야 및 기타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인니에 알맞은 토지확보 방안 제시

##### ○ 민간투자/임차를 유인할 수 있는 신수도 토지활용 방안 제시

- 확보된 토지에 대해 재임대, 매각, 임대/분양, 토지 사용권 부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신수도 지역의 토지 활용 방안 수립
- 적극적인 민간투자 및 임차수요가 유도될 수 있는 토지활용 모델 정립을 통해 민간 사업참여자의 적정 수익 수취 및 신수도 개발이라는 공적 목표 달성 방안 모색

- 민관협력 모델로 공공개발 외 민간 디벨로퍼를 통한 사회적인 인프라(학교, 하수, 기타시설 등) 제공 방안 모색
    - 신수도 실행관리조직 설립 및 운영 방안 제시
  - 세종시 추진 조직구조 및 사례 분석(중앙정부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설, LH시행, 추후 세종시 지자체 신설 등)
  - 전담조직 설립의 장단점 및 세종시 사례를 통한 개선점 분석
  - 인도네시아 신수도 전담조직 설립 및 구조, 운영방안 도출
-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KIND 및 인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
- ※ 과업수행자는 기획재정부의 2020/2021 인니 EIPP(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인니 K-City Network를 통해 수행될 신수도 건설관련 타 정책자문과 기타 인니정부의 MP, 도시설계 내용을 반영하고 연계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 과업수행자는 인니 정부 및 현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e.g.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서비스(자문) 회사에서 시행)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 3. 과업내용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해 한국 경험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계획수립 체계 마련

□ 신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안

- 한국의 토지수용 사례 연구(세종시 사례)
  -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확보 방식(수용, 대토·환지 등) 및 사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입, 개정역사, 장단점, 현행적용례 등)

- 한국의 토지보상법과 각종 개발법 소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의의, 토지사용 제한 등 관련 효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가치 산정방법·시기, 보상절차, 기타 보상 방법, 개발법의 토지보상법 의제 처리 등 연계 메커니즘, 주변지 관리방안, 토지투기 방지 관련 제도 등)
- 기반시설 공급 및 건축단위 민간자본 유입이 이루어지는 개발단계별 토지소유권 이전 과정
- 인도네시아 현행 보상제도 및 집행기관 분석
  - 토지 수용(지장물·영업·영농·어업·분묘보상 등 포함) 보상 법규, 절차, 방법, 실행 등 분석
  - 보상 집행기관 현황분석
  - 대규모 택지개발,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보상사례 Case Study
- 인도네시아 부동산 일반현황 및 신수도부지 현황
  - 인도네시아 지역별, 용도별 토지가격 조사 및 분석
  - 신수도 예정지 토지·지장물 현황 개략적 분석
  - 토지확보 및 개발 장애요인 조사
-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및 개발방안 제안
  - 인도네시아-해외사례 간 토지수용 과정 비교 분석
  - 신수도 구역 보상방안 제시(토지·지장물 보상 절차, 보상금 산정, 보상재원 마련방안 등)
  - 기타 영업·영농·어업·분묘 등 보상 방안 제시
  - 현금 보상, 채권보상, 대토·환지 등 보상 방법 제시
  - 토지취득 촉진방안 제시(임대아파트 입주 제도,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 기타 이주 지원책
- 신수도 예정지, 주변지 토지관리방안(Land Freezing)
  - 단계별 예정지구 제안
  - 사업시행자의 토지관리, 개발행위 제한 방안(규정) 제안
  - 주변지역 개발지, 보전지 구분 제안

- 개발이 필요한 곳에 대한 허용용도, 개발정도, 개발시기 등 제시
  - 도시와 지방의 연계발전 방안 (완충지대 (Buffer Zone) 개발 등) 제안
  - 기타 투기방지대책
-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건설 및 기타 해외 사례 Case Study

□ 민관협력 모델을 통한 토지활용 방안

-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개발 추진시 한국의 공공기관 활용사례
  - 토지수용 및 사업개발 실행자로서 한국의 공공기관 조직구성, 역할, 기능, 관련법
  - 토지개발이익의 공적회수, 교차보조, 민간자본 유인 메커니즘 소개 및 평가
- 세종시 사례 연구
  - 세종시 각 단계별(계획수립, 보상, 개발, 판매, 활용, 사후관리 등) 주체, 기능, 역할 조사
  - 정부 외 기반시설 공급자의 자금투입 및 회수 수익모델 조사
  - 2차원 기반시설 및 건축물(공공건축물, 주택,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자금원, 소유자로서 정부, 공공기관, 민간부문별 사업구조화 메커니즘 비교
  - 세종시 현 단계 성과평가(도시성숙지표, 정책, 사회적편익 등)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신수도개발 자금조달 현황 검토
  - 정부예산, PPP관련법, Sovereign Wealth Fund 계획 등 자금조달계획 분석
  - 신수도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시기별 필요자금, 민간자본 유치 계획 분석
- 대규모 공익목적의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제3국 사례 연구 및 제안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수도 토지활용 방안 제언
  - 현행 신수도 개발계획 분석
  - 개발계획에 따른 단계별 기반시설 및 적정 건축물(공공건축물, 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공급을 위한 필요 소요예산 및 재원 검토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목표에 따른 정부예산 가용 인프라 외 필수 공급시설 도출 및 동 시설들에 대한 민간참여 방안 제시
  - 민간자금 유인 필요 자산에 대한 토지공급방안(상업용 주택 등): 토지공급자, 토지가치평가, 소유권(사용권), 최종소비자 소유권(사용권)

□ 신수도 실행관리조직(PMO) 설립 및 운영방안

- 세종시 추진 조직구조 및 사례 분석
  - 세종시 사례분석: 행정수도 이전 실행관리를 위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국토부 및 신설 세종시 지자체별 역할 및 협력구조
  - 세종시 실행관리조직 (PMO) 설립 및 운영 평가: 교훈 도출
- 신수도 개발 조직에 대한 현행계획 분석 및 PMO 설립, 운영 제언
  - 인도네시아 기존 대규모 공적 목적 개발시 실행관리 조직 사례 분석
  - 신수도 개발을 위한 현행 계획상 조직구조 분석
  - 세종시 교훈 및 인니 현행 계획상 조직 분석을 기반으로한 신수도 실행관리조직 (PMO) 설립 및 운영방안 제안
  - 신수도 PMO 설립, 운영 관련 한국측에서 제공가능한 역량 및 자원 소개
- 신수도 운영단계 리스크 관리 및 안정화 방안 검토
  - 이전 중 또는 이전후 예상되는 리스크 도출
  - 세종시 사례분석: 이전후 부처 및 공공기관 비효율 개선, 효율화 사례
  - 이전에 따른 리스크 해소, 비효율 개선, 조기 안정화 방안 제시

※ 정책자문 개별주제는 아래의 법제도 분야 조사 및 분석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및 계획 체계 분석
- 인도네시아 토지소유권 및 토지 매수·수용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
- 신수도 개발 관련 법제 조사
- 신수도 이전, 개발 및 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검토
-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 및 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특별법, 세부 이전계획 등의 재정 사례 분석 및 비교

[역량강화]

□ 인니 수도이전 관련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 추진

- 한국의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복청 등), 연구 기관(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수도이전, 국가영토정책개발, 사회기반시설 및 민간 투자 관련 프로젝트, 한국의 PPP 사례와 관련한 한국 정책 및 실무경험을 공유

- 세미나, 강의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방안 및 수도이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 [경제협력 강화]

- 신수도 지역 건설을 위한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양국 정부기관 간 세미나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기회 창출 및 협력사업 도출

### 4. 과업의 일반원칙

####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

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성과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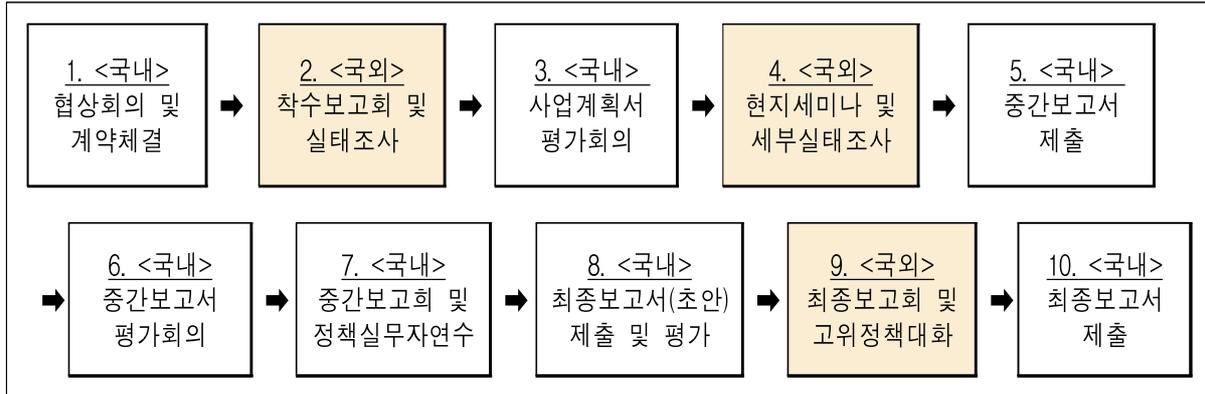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국외출장 및 정책실무자연수 개최 시 출장자 및 연수 참가자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 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외 체류 시 안전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정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을 실시함
-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과업수행사의 연구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발주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 후 발간하여야 함
- 과업내용(주요 결과물)은 발주자 및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모든 현장 활동 및 우리 공사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전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

## 5. 과업수행 방법

### <2021/22 EIPP 사업 단계>



※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추진방안 마련

#### □ 일반사항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통합 실시),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통합 실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통합 실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통합 실시), 국내공유세미나\* 등을 수행
  - \*국내공유세미나는 사업종료 이후 KIND에서 주관하며, 요청시 사업수행 기관(연구진)은 동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물 발표를 수행
- 필요시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공동연구로 추진
- 기타 모든 사업의 기획·집행·결과 공유 활동 등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기획재정부, 2019.10.2.)」에 따라 실시

#### □ 현지 실태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월간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률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 6. 과업성과품 제출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착수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국문, 영문 보고PPT 준비)
  - \*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금차 최종보고서

- 내용: 진행된 사업의 주제별 주요 진행경과를 포함, 협력국 현황 분석 작성
- 사업진행 경과보고서(국문 5페이지 이상), 주제별 보고서(국문 10페이지) 각 1부
- 제출방식 : 이메일

사업 단계별 활동계획보고서(국·영문)

- 내용 : 현지조사,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계획 등
- 기한 : 활동 착수일자 2주 전
- 제출방식 : 이메일

사업 단계별 활동결과보고서(국문)

- 내용 : 현지조사,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결과 등
- 기한 : 활동 종료일자 2주 내
- 제출방식 : 이메일

□ 사업계획서(국문)

- 내용 : 확정된 과업 목표 및 범위, 사업 추진계획 및 보고계획
- 기한 :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후 2주 내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및 세부실태조사 및 연구시 확인한 주요 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기한 : 현지 중간보고서 평가회 개최 2주전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
- 중간보고회는 현지 수도이전 관계공무원 참석하 정책실무자연수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수행(국문, 영문보고 PPT 준비)
- \* COVID-19로 정책실무자 초청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계약 해당년도의 연구 진행 내용 등에 대해 금차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중간보고서)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200페이지 이하, 국문·영문)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국·영문 각 3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전자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필요시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국·영문·인니어 각 10부)
- 기한 :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 평가회 개최 3주 전 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제출
-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국문, 영문 보고PPT 준비)
  - \*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제출방식: 공문 및 이메일, 인쇄본(최종보고서), USB 1세트(성과품 관련 모든 자료)

□ 사업종료보고서(국문)

- 내용 : 사업개요, 수행과정,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 기한 : 계약완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
- 제출방식: 공문 및 이메일

□ 수정보고서

-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기재부 및 KIND내부위원 외 분야별 자문평가위원의 자문(또는 평가) 과정을 별도로 거치며 자문(또는 평가)의견에 따른 수정보고서 제출
- 제출방식: 이메일

※ 착수보고서, 사업계획서 외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USB 제출부수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는 사업활동 점검을 위해 별도 보고서 제출 요청 가능

※ 점검회의 실시(최소 3회) : 1차 점검회의(성과품 : 사업계획서), 2차 점검회의(성과품 :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3차 점검회의(성과품 :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등

##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